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고아읍 2개리 증설에 따른 리장 2명 증원(안 별표)
 - 당초 : 고아읍 문성1리~문성9리(리장 9명)
 - 변경 : 고아읍 문성1리~문성11리(리장 11명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의 후속 조치로 2개 리 증설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691명에서 693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